

노·무·상·담

공인노무사 강경만



해 간 경우 회사가 인출제한 퇴직금의 반액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89년 11월 24일, 88다카25038 판결)

따라서 본 질의의 경우 귀하가 재직 기간 중 업무상 귀책사유를 범함으로써 회사에 손실을 입혀 회사가 귀하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을 갖는다고 할지라도 귀하가 사용자의 상계에 대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를 해준 경우가 아닌 이상 회사는 이런 손해배상청구권으로 귀하의 퇴직금채권을 일방적으로 상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귀하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공제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부 근로감독과에 진정을 제기하여 퇴직금을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종합노동법인한술사무소 (031-782-7823)

Q 저는 다니던 회사로부터 희망퇴직을 권고 받아 올해 8월 회사를 그만둔 후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하였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이 생각한 액수에 미치지 못해 회사에 확인해본 결과 퇴직금에서 제가 회사에 다니던 중 업무상 과실로 회사에 끼친 손해 상당액을 공제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회사의 조치가 적법한지 여부

A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는 바, 퇴직금 역시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

입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은 근로자들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을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가지는 임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판례는 근로자가 형식상으로는 퇴직금을 전액 수령한 후 그 금액을 회사에 임의로 변제하는 형식을 취했으나 실제로는 회사가 근로자가 퇴사하기 전에 근로자로부터 미리 받아 둔 예금청구서를 이용해 회사 스스로 퇴직금의 반액을 은행에서 인출

전·기·상·식

경기도북부전기안전관리공사 대표이사 안병호



중 건물주가 해지하겠다고 하는데 전기시설비를 세든 분이 부담하였을 경우에도 건물주가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지요?

A 전기사용계약 당시에 건물소유주가 사용자 명의로 전기사용을 동의하였으며 통장소에서 사용자가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한 전기요금계좌 당사자인 사용자 동의 없이는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소유자로부터 해지신청이 있다면 소유자가 전기요금 지급을 보증할 수 없다는 의사표시로 보아 전기사용자가 전기요금에 대한 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하며 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으면 해지합니다.

경기도북부전기안전관리공사(031-541-9111)

Q 공장을 이전하였는데 전기시설비를 옮겨서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요?

A 고객의 전기사용설비는 옮길 수 있으나 전기는 전기사용계약시 계약된 일정사용장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사용설비를 다른 곳으

로 옮겨 사용하고 하는 경우에는 이전된 장소에서 새로이 전기사용신청을 하여야 하며 종전에 사용하던 전기사용계약은 해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Q 남의 건물에 임차를 들어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는데 공장이전이 불가능하여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의 효력을

의·학·상·식

경기도립의료원 포천병원 류마티스과 조기관절염과 민도식



회어지는 것도 개인차가 있듯이 관절의 노화도 개인차가 있습니다. 즉 위험요소에 노출되지 않도록, 또한 체중 부담을 많이 받지 않도록 적절한 운동으로 관절을 단련시켜 나가면 평생 동안 건강한 관절을 유지하면서 지낼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노화현상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말해왔지만, 최근에는 이 질환의 원인이 단순한 노화현상으로부터 나타나는 것이 아니므로, 환자 각 개인의 상태에 따라서 얼마든지 병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즉 체중관리, 규칙적인 운동, 약물, 수술적 치료등을 통해서 치료가 가능합니다. 약물적 치료는 소염진통제를 중심으로 한 여러 약물이 개발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약에는 부작용이 있듯이 위장장애, 심혈관 질환 등의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경기도립의료원 포천병원 조기관절염과(류마티스과)에서는 이러한 화학요법 부작용으로 인하여 고통 받는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선 관절염이 있을 경우 혈액 및 방사선 검사를 통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증상이 나타나지는 시기는 대개 50대 이후에 많이 나타나며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 많이 나타납니다. 피부가 주름지고 머리가

☞포천병원(031-539-9114)

퇴행성 관절염

골관절염(퇴행성 관절염)은 관절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성분중에서 연골과 주위골에 퇴행 변화가 나타나서 생기는 관절염으로, 주로 체중을 많이 받는 관절, 즉 무릎(슬)관절, 엉덩이(고)관절 등에 심한 통증과 운동장애를 나타내며, 장기간 방치할 경우에는 관절의 변형까지 초래하는 가장 흔한 관절 질환입니다.

관절의 구성은 관절연골, 주위 골(뼈), 관절막등으로 구성되는데,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퇴행성 변화는 관절 연골에서 시작됩니다. 연골 구성성분을 생산하는 연골세포가 시간이 지나면서 생성양이 줄어들고, 기본물질이 적어지면 연골의 탄력성이 없어져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관절을 보호하는 능력이 약해집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연골의 표면이 거칠어지고, 점차

적으로 병이 진행되면 관절강내로 유입되는 여러 가지 물질에 의해서 염증이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이 때문에 관절이 붓고, 통증이 심해집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노화 현상에서만 생각하였으나 실제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연령, 종족, 성별, 유전적 성향, 비만, 관절의 모양, 호르몬 등 1가지 원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원인이 작용하여 병의 심한 정도와 증상이 나타나는 시기가 환자마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관절 연골의 노화는 대부분 30대에서 시작됩니다. 그렇지만 정상적인 관절조절은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으므로 수년동안, 길게는 몇 십년동안 아무런 증상도 없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증상이 나타나지는 시기는 대개 50대 이후에 많이 나타나며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 많이 나타납니다. 피부가 주름지고 머리가

법·률·상·담

변호사 김제동



회생활상 도저히 인정될 수 없는 경우, ②권리행사의 형식만을 가질 뿐 실질적으로는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한 방편에 지나지 않는 경우, ③권리자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상대방에게 손해와 고통을 줄 목적으로만 권리를 행사할 경우, ④사회상규상(社會常規上) 도저히 권리행사로 인정할 수 없을 정도의 막대한 손해를 상대방에게 입힐 경우 등이 있습니다(대법원 2001. 11. 13. 99다32905, 1999. 9. 7. 99다27613, 1998. 6. 26. 97다42823, 1997. 9. 12. 96다4862).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 있어서는 ①이 건물철거소송에 이은 사정, 문제제기, 0.5평방미터 토지의 전체토지에 대한 효용성, 그 가격의 정도와 이에 비하여 철거되는 건물의 효용상실의 정도, 경제성 확인에 대한 쌍방의 부주의의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권리남용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참고로 위 사안에 관한 유사판례를 보면, 0.3평방미터에 불과한 토지를 인도 받기 위하여 2층 건물의 일부를 철거하려는 건물철거소송에서 권리남용이 인정된 경우가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다4366 판결, 1992. 7. 28. 선고 92다6911, 92다16928 판결).

☞문의: 김제동 변호사(031-829-9311)

Q 【토지경계를 침범하여 축조된 주택의 철거요구가 권리남용인지】 저의 이웃집에 사는 ①이 주택 신축을 위하여 토지경계를 측량해 보더니 자기 소유의 토지 0.5평방미터를 제가 거주하는 2층 주택이 차지하고 있다면서 그 일부를 철거하고, 해당 토지문을 돌려 달라고 청구하고 있습니다. 만일 ①의 청구가 인정된다면 저에게는 2층 주택의 사용에 대한 안전이 보장되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손해가 있는데, ①의 이러한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에는 해당하지 않는지요?

A '권리의 남용'이란 외형상으로는 권리행사인 것과 같이 보이나 구체적 사실에 있어서는 권리의 공공성·사회성에 반하는 것으로서 정당한 권리행사로 인정될 수 없는 행위, 즉, 권리행사가 권

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다62319, 62326 판결). 만일, 어떤 행위가 권리를 남용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행위의 법률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음은 물론, 권리가 박탈되거나 오히려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민법은 제2조에서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라는 법의 기본원칙을 밝히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권리남용이 인정된 관례에서 그 구체적 기준을 살펴보면, ①권리의 행사가 사

여·성·상·식

포천 가족·성 상담센터 이문환



집행관련 미안인도 피해자가 될 수 있음

◆성적 유행의 대표적 3가지

§육체적 성적연동 : 입마춤,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접촉과 가슴, 엉덩이 등의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시각적 성적연동 : 외설적인 사진, 그림, 낙서, 음란출판물을 게시하거나 보여 주는 행위, 직접 또는 팩스나 컴퓨터 등을 통하여 음란한 편지, 사진 그림을 보내는 행위,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를 말하며, 그 외에 사회 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등임

§언어적 성적연동 : 음란한 농담이나 응답패설,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성적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희소 관계를 강요하거나 희유하는 행위, 희식 자리에서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말한다.

☞문의: 포천가족·성상담센터(031-542-3171)

◆성폭력이란? 강간, 윤간 강도강간 뿐 아니라 성추행, 언어적 희롱, 음란전화, 성기노출, 어린이 성추행, 아내 강간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가하는 성적 행위로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 함은 원치 않거나 거부하는 행위를 상대방에게 계속 하거나 강요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폭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행동제약을 유발시키는 것도 간접적인 성폭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성희롱 당사자

§가해자 : 공공기관 종사자, 민간기업 사용자, 또는 근로자, 업무관련성이 있는 자

§피해자 : 남성도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직원모집이나 채용과정에 있는 구직자, 교육생, 학습자, 시설이용 고객, 공무원

세·무·상·담

세무사 박운중



업자와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이 위에서 말하는 일정규모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귀하의 경우와 비슷한 소득세 예규를 살펴보면, 거주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당해 사업을 승계한 경우 상속으로 피상속인의 납세의무가 승계됨으로써 상속인이 본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은 구분하여 계산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직전 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이 없는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사업을 상속으로 승계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신규사업자로 보는 것이므로,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한편, 피상속인에게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 이월공제액이 있는 경우, 상속인을 당해연도 신규사업자로 보는 것이므로 이월공제금액은 상속인의 소득세 계산에 있어서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세무사 박 운 중 031-872-6116

Q 【상속으로 사업을 승계 받은 경우의 소득세 및 기장의무 등】 부친의 사망으로 부친의 사업을 승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사업자등록업무와 소득세 및 기장의무 등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A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분이 변경되는 때는 부가가치세의 규정에 의거 상속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상속인에게 과세할 것은 이를

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와 구분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소득세법상 모든 사업자는 장부의 비치·기장의무가 있으며 비치·기장한 장부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정규모미만사업자(소득세법 시행령 규정, 연간 외형이 제조업 1억 5천만원, 판매업 3억원, 부동산임대·서비스업 7천 5백만원)에 대하여는 "간편장부"에 의한 기장을 하더라도 기장한 경우로 인정하고 있으며, 그 외의 사업자를 "복식부기의무자"라고 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당해연도 신규사

제5회 포천사랑 백일장 대회 개최요강

- 일시 : 2006년 9월 27일(수) 오후 2시
- 장소 : 포천반월아트홀 광장



1. 목적: 포천을 사랑하는 시민과 학생들이 문학에 대한 문학적 소질을 발굴하고 이를 통한 지역 향토문학의 발전을 이루는데 있다.
2. 대회종목
 - 1)부문: 초등부, 중학교부, 고등학교부, 일반부(대학생 포함)
 - 2)종목: 운문, 산문
3. 참가자격
 - 1)학생: 관내 초·중·고교 학생으로서 학교장이 추천한 학생
 - 2)일반: 관내 소재 대학(교) 학생 및 포천시 거주 주민

※학교장께서는 9월23일까지 참가학생 명단을 팩스로 제출바랍니다.
※대학생 및 일반은 대회 당일 현장에서 접수합니다.
4. 참가비: 없음
5. 준비물: 필기구(※원고지는 주최 측에서 당일 배부할 것임)
6. 시제: 포천사랑에 관련된 주제로 대회당일 발표함.
7. 시상: 입상 등급에 따라 상장(입선 이상) 및 상품(차하 이상)을 시상할 것임.
 - ※장원이나 다수의 학생을 입상시킨 지도교사에게는 시상 또는 교육장 표창을 시상할 것임.
10. 심사위원: 문인협회 소속 교수 및 등단 작가들로 구성, 엄정 심사할 것임.
11. 시상식
 - 1)일시: 2006.10.18(수) 14:00시
 - 2)장소: 포천여성회관(3층 청성홀)

※입상자 및 관계기관에 추후 통보할 것임
12. 대회관련문의
 - 1)포천예총(포천문인협회) Tel)031-531-8181, 531-8183 Fax) 031-532-8240
 - 2)포천문인협회 이재옥 회장(018-225-3191) 이원용 사무국장(017-364-9999)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 포천지부장